##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권수정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1431 번호

발의년월일: 2020년 4월 3일

발 의 자: 권수정, 임종국, 고병국,

김화숙, 이광호, 김달호, 이상훈, 문장길, 이태성, 최 선, 황인구, 전병주,

이호대. 채유미. 채인묵 의원

(15명)

##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및 산하 집행기관 등은 업무추진비를 각 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, 이는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, 효율성을 확보 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- 서울시 사무영역 및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음. 투자·출연기관, 공기업 등의 업무분담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자회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회사의 업무추진비를 공개 대상으로 포함하고자 함.
-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함에 있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성과달성지표로 포함하는 등 자회사 역시

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 조직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음.

○ 서울시 6개의 자회사 중 3곳은 이미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며, 이외 자회사 역시 행정 사무감사, 의원요구자료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음.

#### 2. 주요골자

가. 서울시 업무추진비 공개에 있어 자회사를 공개 대상으로 포함 하고자 함(안 제2조).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

#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"산하 공기업, 투자·출연기관"을 "산하 공기업, 투자·출연기관과 그 자회사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
1. "업무추진비"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	1
무추진비, 부서운영업무추진비,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	
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 한다.	 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서울특별시 <u>산하 공기업, 투</u> <u>자·출연기관</u> 및 서울시립대 학교(이하 "산하기관"이라	나 <u>산하 공기업, 투</u> <u>자・출연기관과 그 자회사</u> -
한다)	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